
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(노종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21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2.

발 의 자 : 노종면 · 박선원 · 서영석
문금주 · 윤종균 · 이해식
이건태 · 양부남 · 강준현
모경종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이나 저항이 빈번하게 발생함. 채권자의 재산권, 채무자의 주거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임.

그러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이주대책이 없는 채무자가 동절기에 강제퇴거를 당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,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보호를 위해 강제퇴거 현장에서 공무원의 현장 입회 규정과 악천후 시 집행 금지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.

이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할 때 저항을 받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, 호우·대설·한파 등 기상이 열악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함(안 제6조, 제8조제1항 및 제258조제1항).
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참여자) ①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시

· 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, 시·읍·면 직원(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, 읍·면지역에서는 읍·면 직원을 말한다) 또는 경찰공무원(이하 이 조에서 “공무원등”이라 한다)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 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그 친족·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등 중 한 사람 또는 성년 두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집행관으로부터 입회인 또는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공무원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공휴일과 야간에는”을 “공휴일, 일출 전 및 일몰 후에는”으로 한다.

제25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호우, 대설, 폭풍해일, 지진해일, 태풍, 강풍, 풍랑 및 한파 등

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「기상법」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에는 집행관은 그 시기 동안에 채무자의 주거에 대한 인도청구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참여자)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그 친족·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·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, 시·읍·면 직원(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, 읍·면지역에서는 읍·면 직원) 또는 경찰공무원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6조(참여자) ①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시·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, 시·읍·면 직원(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, 읍·면지역에서는 읍·면 직원을 말한다) 또는 경찰공무원(이하 이 조에서 “공무원등”이라 한다)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그 친족·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등 중 한 사람 또는 성년 두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집행관으로부터 입회인 또는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구 받은 공무원등은 정당한 이유</p>

제8조(공휴일·야간의 집행) ①
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
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
있다.

② (생략)

제258조(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
집행) ① 채무자가 부동산이나
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
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
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
한다. <단서 신설>

② ~ ⑥ (생략)

없이 그 요구를 거절하여서는
아니된다.

제8조(공휴일·야간의 집행) ①
공휴일, 일출 전 및 일몰 후에
는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58조(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
집행) ① -----

----- . 다만, 호우, 대설, 폭
풍해일, 지진해일, 태풍, 강풍,
풍랑 및 한파 등으로 해당 지
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
되어 기상청장이 「기상법」
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
한 때에는 집행관은 그 시기
동안에 채무자의 주거에 대한
인도청구의 집행을 하여서는
아니된다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